

#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지침

[제정 2012. 05. 01]

**제1조(목적)**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이하 ‘성과급’)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활동 증진,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, 연구비 수주 증대 기여 및 본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연구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대상)** ① 성과급 지급 대상은 간접비가 계상되고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과제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모든 외부연구과제의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  
② 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외부연구과제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(지원시기)** 성과급은 전년도 3월 ~ 당해연도 2월에 종료된 과제로 5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총장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.

**제4조(지원방법)** ① 성과급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학교발전 기여와 후속 연구 추진 및 연구의욕 고취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 계상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, 연구책임자의 지급 청구 신청 후 지원한다.  
㉠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책정한 공동연구원 기여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㉡ 부득이 ㉠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 $2/(n+1)$ 로 공동연구원은  $1/(n+1)$ 로 지급한다.

**제5조(제한조건)**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, 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.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.)  
② 산학협력단장은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 
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가 매년 특정기간 동안 본교에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 간접비 고시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
㉡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 간접비 고시율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해

사업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 등에 해당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별도의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이를 적용하였는지 여부

- 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의무 간접비율이 없는 연구과제에 대해 본교에서 정한 최소 간접비율 이상 또는 사전 협의에 따라 승인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

**제6조(기타사항)** 본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제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용지침에 의하되 추가로 제기되는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인센티브) 지급 기준

### □ 국가연구개발사업(간접비 15% 징수과제)

1. 2009년 5월 1일 이후 협약된 과제에 한해서 지급.  
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)
2. 2009년 5월 1일 이전 협약된 다년도과제 중 2009년 5월 1일 이후 당해연도 협약이 이루어진 과제는 **규정에 따라 지급**.
3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, 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능률성과급을 반납.  
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.)

### □ 일반연구 과제(지자체, 민간 등)

1.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.
2. 산학협력단 협약과제 중 간접비 징수기준이 이공대학 12%, 그 외 10% 징수과제에 대해 지급. (간접비 징수비율이 이공 7%, 인문·사회·예체능 5% 이하 과제는 제외)
3. 부설연구소 협약과제 중 간접비 징수기준이 12% 징수과제에 대해 지급.  
(간접비 징수비율 중 연구소 징수액 제외한 4% 이하 과제는 제외)

### □ 간접비 계상기준 지원기관 비율 지정

1.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 징수기준이 최소 10%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.  
(10% 이하일 경우 지급 불가)
2. 일반연구 민간과제 간접비 징수기준이 최소 이공대학 7%, 그 외 5%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. (이공대학 7%, 그 외 5% 이하일 경우 지급 불가)

\* 비율은 총연구비가 아닌 인건비+직접비 기준임.